

중앙일보

2004년 4월 12일(월요일) A-3

사회

## 정재원씨 '징용 소송' 기각 반복

### 가주 항소법원

**<속보>**일본기업을 상대로 미법원에 강제 징용 피해 보상 소송을 냈으나 4년여 만에 기각 처리되었던 정재원씨의 케이스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.

**<본보 4월1일자 A-2 참조>** 제 2 순회 가주항소법원은 10일 1999년 가주에서 제정된 '징

용배상 특별법'(일명 헤이든 법)이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정재원씨의 케이스 기각 명령 거부 판결을 무효 처리하고 케이스를 기각시켰던 지난 30일의 명령을 항소심에서 번복하고, 다시 소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다.

정씨의 변호인들은 "이번 판결은 '아주 큰 승리'라며 "이번 소송에서 많은 공격을 받고

있으나 모두 이겨냈다"고 말했다.

한편 정씨의 변호를 담당한 베리 피셔 변호사는 "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잘못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미 정부가 이번에는 일본의 편에서 있다"며 "미 정부는 일본 시멘트사의 변호단을 돕기 위해 법무부의 변호사까지 보내주고 있다"고 밝혔다.